



도이치 더블드래곤 종류형 채권혼합투자신탁-자 1 호

변경 전	변경 후
<p><b>제 2 조(투자신탁의 종류, 자산운용회사 및 수탁회사) ①생략</b></p> <p>②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도이치 더블드래곤 주식투자신탁-모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 도이치자산운용 아시아 (Deutsche Asset Management Asia. Ltd))</li> <li>2.도이치 마스터 코리아채권투자신탁-모 (자산운용회사: 도이치자산운용주식회사)</li> </ol>	<p><b>제 2 조(투자신탁의 종류, 자산운용회사 및 수탁회사) ①현행과 같음</b></p> <p>②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도이치 더블드래곤 주식투자신탁-모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 도이치자산운용 아시아 (Deutsche Asset Management Asia. Ltd))</li> <li>2.도이치 마스터 코리아채권투자신탁-모 (자산운용회사: 도이치자산운용주식회사)</li> <li><b>3.도이치 DWS 코리아 단기채권투자신탁-모 (자산운용회사: 도이치자산운용주식회사)</b></li> </ol>
<p><b>제 14 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생략</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종류(Class) A 수익증권</li> <li>2.종류(Class) C1 수익증권</li> <li>3.종류(Class) C2 수익증권</li> </ol>	<p><b>제 14 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현행과 같음</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종류(Class) A 수익증권</li> <li>2.종류(Class) C1 수익증권</li> <li>3.종류(Class) C2 수익증권</li> <li><b>4.종류(Class) C-I 수익증권</b></li> </ol>
<p><b>제 20 조(수익증권의 판매기준 및 판매가격)</b></p> <p>① 수익증권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 단, 제 3 호의 납입금액은 최초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종류(Class) A 수익증권 : 판매수수료 징구 방법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경우</li> <li>2.종류(Class) C1 수익증권 : 제한없음</li> <li>3.종류(Class) C2 수익증권 : 수익자의 납입금액이 50 억을 초과하는 법인투자자</li> </ol>	<p><b>제 20 조(수익증권의 판매기준 및 판매가격)</b></p> <p>① 수익증권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 단, 제 3 호 <b>및 제 4 호</b>의 납입금액은 최초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5. 종류(Class) A 수익증권 : 판매수수료 징구 방법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경우</li> <li>6. 종류(Class) C1 수익증권 : 제한없음</li> <li>7. 종류(Class) C2 수익증권 : 수익자의 납입금액이 50 억을 초과하는 법인투자자</li> <li><b>8. 종류(Class) C-I 수익증권: 법에서 정하는 간접투자기구, 보험회사의 변액 보험(특별계정), 국가 재정법에 따른 기금, 100 억원이상 매입한 개인 또는 500 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b></li> </ol>

변경 전	변경 후
<p><b>제23조(환매수수료)</b> ①이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제21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종류수익증권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p> <p>②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당해 종류에 따라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p> <p>2. 종류(Class) A, C1, C2 수익증권  가. 180일 미만 : 이익금의 70%  나. 1년 미만 : 이익금의 40%</p> <p><b>제37조(투자한도)</b> ①생략</p> <p>1. 제2조제2항제1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이하로 한다.  2. 제2조 제2항 제2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자산총액의 100% 이하로 한다.</p> <p>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 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용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p>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 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등의 가격변동으로 제 1 항제 1 호 내지 제 2 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p>	<p><b>제23조(환매수수료)</b> ①이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제21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종류수익증권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p> <p>②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당해 종류에 따라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p> <p>1. 종류(Class) A 수익증권  <b>30일 미만 : 이익금의 70%</b></p> <p>2. 종류(Class) C1, C2, C-I 수익증권  <b>30일 미만 : 이익금의 70%</b>  <b>90일 미만 : 이익금의 30%</b></p> <p><b>제37조(투자한도)</b> ①현행과 같음</p> <p>1. 제2조제2항제1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이하로 한다.  <b>2. 제2조 제2항 제2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자산총액의 90%이하로 한다.</b>  <b>3. 제2조 제2항 제3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자산총액의 90%이하로 한다.</b></p> <p>②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 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용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p>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 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등의 가격변동으로 <b>제 1 항제 1 호 내지 제 3 호</b>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p>

변경 전	변경 후
<p><b>제 38 조(운용 제한)</b>            ②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투자신탁수익증권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 37 조 제 1 항 제 1 호내지 제 2 호, 이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를 이를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p> <p><b>제 40 조(투자신탁보수)</b> ①생략            ②생략            ③생략</p>	<p><b>제 38 조(운용 제한)</b>            ②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투자신탁수익증권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 37 조 제 1 항 제 1 호내지 제 3 호, 이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를 이를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p> <p><b>제 40 조(투자신탁보수)</b>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p> <p><b>4. 종류(Class) C-I 수익증권</b>            가. 자산운용회사보수율:연 1000 분의 7.0            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 분의 0.3            다. 수탁회사보수율 :연 1000 분의 0.6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연 1000 분의 0.25</p>

공시일자	제목	공시사항
2009년 04월 20일	도이치 더블 드래곤 주식혼합 투자신탁 자1호	

1. 해당 펀드: 도이치 더블 드래곤 주식혼합 투자신탁 자1호

2. 변경사항

1) 모투자신탁의 추가

2) 수익증권 종류(C-I) 추가

3) 환매수수료 기간 변경

(변경전) 종류(Class) A,C1,C2 수익증권

가. 180일 미만 : 이익금의 70%

나. 1년 미만 : 이익금의 40%

(변경후)

1.종류(Class) A 수익증권: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2.종류(Class) C1,C2, C-I 수익증권 :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4) 투자한도 변경

(변경전) 채권형 모투자신탁에 투자신탁재산의 100% 이하

(변경후) 채권형 모투자신탁에 투자신탁재산의 50% 미만

3. 효력발생일: 2009년 4월 8일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대비표 및 약관 그리고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이치 더블드래곤 종류형 주식혼합투자신탁-자 1 호

변경 전	변경 후
<p><b>제 2 조(투자신탁의 종류, 자산운용회사 및 수탁회사) ①생략</b></p> <p>②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도이치 더블드래곤 주식투자신탁-모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 도이치자산운용 아시아 (Deutsche Asset Management Asia. Ltd))</li> <li>2.도이치 마스터 코리아 채권투자신탁-모 (자산운용회사: 도이치자산운용주식회사)</li> </ol> <p><b>제 14 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생략</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종류(Class) A 수익증권</li> <li>2. 종류(Class) C1 수익증권</li> <li>3. 종류(Class) C2 수익증권</li> </ol> <p><b>제 20 조(수익증권의 판매기준 및 판매가격)</b></p> <p>① 수익증권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 단, 제 3 호의 납입금액은 최초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종류(Class) A 수익증권 : 판매수수료 징구 방법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경우</li> <li>2.종류(Class) C1 수익증권 : 제한없음</li> <li>3.종류(Class) C2 수익증권 : 수익자의 납입금액이 50 억을 초과하는 법인투자자</li> </ol>	<p><b>제 2 조(투자신탁의 종류, 자산운용회사 및 수탁회사) ①현행과 같음</b></p> <p>②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도이치 더블드래곤 주식투자신탁-모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 도이치자산운용 아시아 (Deutsche Asset Management Asia. Ltd))</li> <li>2. 도이치 마스터 코리아채권투자신탁-모 (자산운용회사: 도이치자산운용주식회사)</li> <li><b>3. 도이치 DWS 코리아 단기채권투자신탁-모 (자산운용회사: 도이치자산운용주식회사)</b></li> </ol> <p><b>제 14 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현행과 같음</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종류(Class) A 수익증권</li> <li>2. 종류(Class) C1 수익증권</li> <li>3. 종류(Class) C2 수익증권</li> <li><b>4. 종류(Class) C-I 수익증권</b></li> </ol> <p><b>제 20 조(수익증권의 판매기준 및 판매가격)</b></p> <p>① 수익증권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 단, 제 3 호 <b>및 제 4 호</b>의 납입금액은 최초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종류(Class) A 수익증권 : 판매수수료 징구 방법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경우</li> <li>2. 종류(Class) C1 수익증권 : 제한없음</li> <li>3. 종류(Class) C2 수익증권 : 수익자의 납입금액이 50 억을 초과하는 법인투자자</li> <li><b>4. 종류(Class) C-I 수익증권: 법에서 정하는 간접투자기구, 보험회사의 변액 보험(특별계정), 국가 재정법에 따른 기금, 100 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 또는 500 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b></li> </ol>

변경 전	변경 후
<p><b>제23조(환매수수료)</b> ①이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제21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종류수익증권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p> <p>②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항에서 “이익금” 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당해 종류에 따라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p> <p>1. 종류(Class) A,C1,C2 수익증권  가. 180일 미만 : 이익금의 70%  나. 1년 미만 : 이익금의 40%</p> <p><b>제37조(투자한도)</b> ①생략</p> <p>1. 제2조제2항제1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하로 한다.  2. 제2조 제2항 제2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자산총액의 100% 이하로 한다.</p> <p>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p>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등의 가격변동으로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p>	<p><b>제23조(환매수수료)</b> ①이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제21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종류수익증권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p> <p>②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항에서 “이익금” 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당해 종류에 따라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p> <p>1. 종류(Class) A 수익증권  <b>30일 미만 : 이익금의 70%</b>  2. 종류(Class) C1,C2, C-I 수익증권  <b>30일 미만 : 이익금의 70%</b>  <b>90일 미만 : 이익금의 30%</b></p> <p><b>제37조(투자한도)</b> ①현행과 같음</p> <p>1. 제2조제2항제1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하로 한다.  2. 제2조 제2항 제2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자산총액의 <b>50% 미만으로</b> 한다.  <b>3. 제2조 제2항 제3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자산총액의 50% 미만으로 한다.</b></p> <p>②<b>제1항제1호 및 제3호</b>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p>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등의 가격변동으로 <b>제1항제1호 내지 제3호</b>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p>

변경 전	변경 후
<p><b>제 38 조(운용 제한)</b>            ②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투자신탁수익증권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 37 조 제 1 항 제 1 호내지 제 2 호, 이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를 이를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p> <p><b>제 40 조(투자신탁보수)</b> ①생략            ②생략            ③생략</p>	<p><b>제 38 조(운용 제한)</b>            ②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투자신탁수익증권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 37 조 제 1 항 제 1 호내지 제 3 호, 이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를 이를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p> <p><b>제 40 조(투자신탁보수)</b>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p> <p><b>4. 종류(Class) C-I 수익증권</b>            가. 자산운용회사보수율: 연 1000 분의 7.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3            다. 수탁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6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 분의 0.25</p>